

기 안 지

기 안 자	문화체육관광부 오원근	진 화 번 호	28-1444	공 보	필 요 불필요	
계	계 장	문화체육과장	학무국장	전 결		교육감
협 조	가 명	1966. 7. 1		시 년	행 일	1966. 7. 7
기 년	안 일	1966. 7. 1		시 년	행 일	1966. 7. 7
분 류	기 호	문 1080 — 6684		1966. 7. 7 통제관		
경 수	유 신	문교부장관 문화재 관리국장		발 신	교 육 감	
제 목	지정문화재 (사적단점문) 이설					
<p>1. 다음 종로구 사적등소재 건물 제 177호 사적단점문이 도시계획법에 적용케 되어 현재시용 (66.5.16 착공) 중이 있는 명천 나자동간의 보도상이 위치하게 되므로 이를 이설하여 달라는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이 왔사온바,</p> <p>2. 본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법 제 20조 제 5항에 따라 문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게 되었사온데 본계획이 있어도 사전허가가 있어야 할것으로로 생각되오며 또한 급후 이설케 할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조치등에 대하여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유원. 서울특별시장 공한 사본 1통. 끝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사적등 1-27 참고 1. 명천의 들을리축간격 3.5m 2. 方位 距離 7m 設計者 朴相英 74-1722-2100</p>						

제
전결
조
에
위
합
호

서울특별시

서건토 410 - 3403

66, 6, 19.

수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제목 문화제 (사직단 정문) 이설에 대한 질의"회답"

1. 관련문서

가. 서울교문 1080-493 (66, 5, 17)

나. " -5782 (66, 6, 11)

2. 위 관련문서에 의한 회신으로서 사직단 정문은 도시계획선에 별첨 도면 표시와같이 저촉되어 보도상에 위치하므로 위원회에서 조속 이설하시기를 바라며.

가. 본공사 (영천-내자동간 가토축조공사(제4차)는 66, 5, 16에 기 착공하였음을 회신 합니다.

유첨. 도면 1부 끝.



(참고) 본문에 첨부되었던 도면 1부는 문교부에 진달하였음

서울특별시 장 김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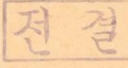

현



7. 1.

0117 / 116

증산, 수출, 신설
기안지

기안자	문화체육 고재성	전화번호	28-1444	공보	필요	불필요	제	
계	계장	문화체육과장	학무국장			교육감	과장전결사항	
							전결규정	
협조	자명			보존			호	
기년	안일	시년	행일	년월	정	서	기	
분류	기호	번호	1966. 6. 11 1966. 6. 11					
경수	유신	서울특별시 건설국장		발신	교육감			
계	목	문화재 (사적단 정문) 이설에 대한 정의						
1. 서울교본 1080-423 (66.5.17) 에 대한 일임이다.								
2. 분건 사적단 정문의 이설계획 여부를 정의 한바 있으나 아직 회보가 없어 재조치하오리 문 회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								

증산, 수출, 건설

기안지

기안자	문화체육과 고재성	전화번호	28-1444	공보	필요	불필요	계	
계	계장	문화체육과장	학무국장				교육감	7조
		전결					5.17	17호
협조	자명안일	시행일	1966. 5. 17	통제	보존	정서기		
년월	1966. 5. 16	년월일	1966. 5. 17	통제	보존	정서기		
분류	서울교문 1080-	기호	6/23	통제	보존	정서기		
경수	서울특별시장	유신	발신	고육감				
참조	건설국장							
제목	문화재(사직단 정문) 이설에 대한 질의							
	1. 측문화비에 의하면 시내종로구사직동 1의 27 부근 도로확장공사 실시로 인하여, 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(보물제 172호 사직단 정문)를 이전한다. 동 문화재는 국립문화재 당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이므로, 이전 사실 여부를 알고자 조 하오.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							